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. 9. 21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9월 6일

나. 발 의 자: 임헌호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9월 14일

라. 상정일자: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9. 1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임헌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조건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 시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(안 제3조)
-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옥연)

-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요건 중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(신청 절차)에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1/2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조항을 삭제함.
- 검토 결과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20년 일부개정을 통해 ‘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기존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각종 지원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된 조례임.
 -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한 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1년 자치법규안을 통해 권고한 사항으로, 서울시 내 타 자치구도 골목형상점가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,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를 두고 있는 서울시 내 21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2021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, 동의요건을 당초에 두지 않았던 도봉구 포함 15개 자치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소유자의 1/2이상의 동의 요건을 두지 않고 있음.
 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헌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9. .

발 의 자 : 임헌호·전승관·신흥식
·양송이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현행 골목형상점가 신청조건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조직화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.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‘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(안)’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‘토지·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’ 요건을 삭제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신청 절차 동의 요건 완화(안 제3조)

나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정비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호의2,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3. 9. 8. ~ 9. 12.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2조 제2호의2”를 “제2조제2호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 중 “제 2조제3호”를 “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 제2조 제2호의2 --- ----- -----.
제2조(지정) ① (생략) ②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	제2조(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 제2조제3호 --- ----- -----
제3조(신청 절차)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수에서 제외한다. 1. (생략)	제3조(신청 절차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≤후단 삭제> 1. (현행과 같음)

<u>2.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</u> <u>2분의 1 이상의 동의. 이 경우</u> <u>동의 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</u> <u>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</u> <u>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</u> <u>다.</u>	<u><삭 제></u>
<u>3.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</u> <u>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</u>	<u><삭 제></u>
4. ~ 6. (생 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